

제 1161 호
1985. 8. 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부
편집인 : 공보관리관 우
전화 : 731-6111-3
주소 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58 호 :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(면적정정) 고시	2
제 559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지적변경승인고시	2

비 고 판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505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58 호

주택개발재개발구역변경(면적정정)고시

1. 건설부고시제 470 호('73.12.1)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계제 3, 홍제제 1, 하왕제 2, 신계, 답십리제 3, 도화, 아현제 1, 신림제 4, 거여제 2 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4조 및 제 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 58 조제 1항제 1호에 의거 구역변경(면적정정)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24.

서울특별시장

가. 내 역

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기 정	변경(정정)	
상계제 3	도봉구상계동산 107 일대	59,000	64,820	면적정정
홍제제 1	서대문구홍제동 1-33 일대	45,000	50,790	"
하왕제 2	성동구행당동산 12 일대	148,500	101,890	"
신 계	용산구신계동 1-1 일대	15,000	17,780	"
답십리제 3	동대문구답십리동 49 일대	52,900	61,030	"
도 화	마포구도화동 2 일대	198,000	171,480	"
아현제 1	아현동 85 일대	135,000	138,860	"
신림제 4	관악구신림 6 동 808-117 일대	12,600	25,200	"
거여제 2	강동구거여동 181 일대	80,200	75,380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59 호

주택개발재개발사업구역지적변경승인
고 시

1. 건설부고시제 470 호('73.12.1)로

구역지정되고 같은 고시제 227 호('85.5.18)로 구역변경 지정된 전농 제 2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, 같은법 시행령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8. 24 서울특별시 장</p>	<p>가. 지적변경 승인내역</p> <p>1) 구역명 : 전농 2 구역</p> <p>2) 위치 : 동대문구전농동 127 번 지 일대</p> <p>3) 변경전면적 : 5,670 평방미터</p> <p>4) 변경후면적 : 8,277 평방미터</p> <p>나. 지적변경승인도면 : 별첨 (생략)</p>
Empty space for map or additional details	